省齋 柳重敎의 禮 실천과 「方喪儀節」*

김 윤 정**

1. 머리말
2. 柳重敎의 禮 관련 저술과 성격
  1) 유중교의 생애와 예 관련 저술
  2) 禮敎의 실천과 성격
3. 「方喪儀節」의 성격과 내용
  1) 「방상의절」의 구성과 성격
  2) 國恤의 절차와 의절
  3) 國恤 중 私禮의 시행
4. 맺음말

1. 머리말

省齋 柳重敎(1832~1893)는 華西 李恒老(1792~1868)의 제자로서, 重菴 金平默(1819~1891)과 함께 화서학파를 대표하는 학자였다. 화서학파는 조선말기 외세의 침략이 강화되는 위기의 시대에 성리학의 도덕관념을 토대로 화이론적 세계관과 위정척사론을 강조하였다. 유중교는 이항로의 위정척사론을 이론적으로 발전시켰고, 勉菴 崔益鉉(1833~1906)과 毅菴 柳麟錫(1842~1915)으로 이어지는 의병투쟁의 사상적 근거를 확립한 인물로서 주목받았다.

성리학과 춘추대의에 대해 비판적인 경우라도, 의병이 갖는 국권수호의 성격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2018년도 21세기 신규장각자료구축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IKS-2018-452-24303-省齋 柳重敎의 禮 실천과 「方喪儀節」).
**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연구교수.

은 민족주의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왔다. 이에 의병운동의 사상적 토대가 된 위정척사를 민족적 주체성과 민족의식의 발현으로 확장시켜 이해하는 경향이 강했다.[1] 반면 유중교의 척사사상은 주자학적 가치와 유교문명의 보전을 위한 사상적 노력이자 사림의 책임윤리의식의 표출이었고, 이러한 도덕적 대응은 현실적 성취를 만들어 낼 수 없다는 한계가 지적되었다.[2] 그러나 위정척사는 소중화로서의 자부심과 이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설명하면서 화이론 자체가 갖는 시대적인 성격과 의미를 부각시키는 연구가 제기되었다.[3]

또한 유중교의 위정척사론은 성리학적 심성론의 실천성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검토되었다. 유중교는 스승인 이항로의 '主理論'적 心說을 調補하는 입장에서 김평묵과 논쟁했지만 心을 중심으로 하는 성리학적 도덕 실천의 지향을 그대로 계승하였다는 것이다.[4] 이러한 유중교의 심성론은 19세기 후반 세도정치와 三政의 문란, 신분제의 동요 등 정치·경제·사회적인 혼란 속에서 도학적 경세론을 주장하는 학문적 토대로 인식되었다.[5]

유중교의 실천적 학문은 講學과 음악의 연구에서도 주목되었다. 講錄 자료를 분석하여, 長潭에서 이루어진 강학은 柯亭의 강학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지만 화서학파의 외연을 확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6] 한편 화서학파의 문인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유중교의 習禮와 行禮의 실제에 접근한 연구도 이루어졌다.[7] 또한 향음주례 등의 의례에서 사용된 음악을 중심으로, 禮樂을 통해 훌륭한 심성을 함양하도록 가르치는 '敎以禮樂'의 의미가 강조되었다.[8]

---

1) 오영섭, 1999『화서학파의 사상과 민족운동』, 국학자료원.

2) 이재석, 2009「성재 유중교의 척사사상」『지역문화연구』8.

3) 하영휘, 2016「柳重敎(1821~1893)의 춘추대의, 위정척사, 중화, 소중화」『민족문학사연구』60.

4) 김근호, 2013「화서학파 심설논쟁의 전개과정과 철학적 문제의식」『율곡학연구』27.

5) 이상익, 2009「성재 유중교의 경학과 경세론」『태동고전연구』27; 송기중, 2013「壬戌民亂期 省齋 柳重敎의 三政論」『역사와 담론』65.

6) 구완회, 2010「省齋 柳重敎의 강학과 문인집단의 확대」『歷史敎育論集』44.

7) 김대식, 2007『華西學派의 門人敎育 硏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8) 송지원, 2000「19세기 유학자 유중교의 樂論」『한국음악연구』28; 금장태, 2007「성재 유중교의 음악론」『종교와 문화』13; 임란경, 2018『성재 유중교의 악론과 실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유중교의 학문에 대한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예학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강학과 음악에 대한 연구에서 유중교의 예 관련 저술이 일부 검토되었을 뿐이다. 최근 18~19세기 畿湖 禮說을 분석하면서, 화서학단에 속한 유중교의 예학이 정리되었다. 家儀와 講規 등을 통해 집안과 문중, 향촌의 공동체를 결속시켜 외세에 대항하고자 했음을 강조하였다.[9] 이러한 측면은 19~20세기 節要本, 笏記類 예서의 의미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드러나고 있다.[10]

그럼에도 유중교 예설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유중교는 편지를 통한 예문답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절과 예설을 저술했다. 이러한 예 관련 저술들은 대외적으로 위정척사를 내세우는 동시에 대내적으로 예교 시스템을 재구축하여 사회적 혼란을 극복하려는 현실적·실천적 노력의 일환이었다. 그렇다면 그가 지향한 예교질서는 어떠하였고 이전 시기의 그것과는 어떠한 공통점 혹은 차이점을 갖는지에 대해 보다 심도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먼저, 조선말기 시대적 혼란 속에서 예교질서를 회복하려는 유중교의 구상과 실천을 검토하였다. 그는 춘추대의를 원칙으로 내세웠지만, 개항 이후 외세의 영향은 더욱 강해졌고 고종 역시 복제개혁 등을 통해 개화를 추진하고 있었다. 이에 유중교는 국가 차원이 아닌 집안과 종족, 학교와 향촌 내에서 예교를 통해 춘추대의를 세우는데 주목하였고 다양한 行禮 의절들을 저술하였다. 이러한 의절들은 당시의 대내외적 사건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만큼, 시기에 따라 정리하고 그 성격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유중교의「方喪儀節」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향촌 사족의 정체성 확립과 예교의 주체로서의 위상에 접근하였다. 외부적으로 열강의 침략 속에서 춘추대의를 확립하는 것과 동시에 내부적으로 신분에 따른 명분을 확고히 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문제였다. 국상이라는 국가 차원의 의례에서 향촌의 사족과 庶人은 가시적으로 구분되는 다른 복색을 하고 별도의 위치에서 곡을 행하는 등 차별적으로 인식되었다. 예교질서의 강화에서 향촌의 사족은 예교의 주체로서의 차등적 지위를 유지하고자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9) 정길연, 2018『18~19세기 畿湖 禮說 연구』, 경성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0) 조창규, 2015「舊韓末과 日帝强占期 禮書 刊行의 傾向과 意味 硏究」『동양한문학연구』40.

2. 柳重敎의 禮 관련 저술과 성격

1) 유중교의 생애와 예 관련 저술

유중교의 예 관련 저술은 실천을 위한 의절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전 생애에 걸쳐 집안-문중-학교-향촌에서의 行禮를 위한 다양한 의절을 저술하였다. 그는 개항과 외세의 침입이라는 격변의 시기를 살면서, 경세론적 유학자로서 시대의 고민을 함께 했다. 이에 각 시기별로 대내외적 사건에 따라 예 관련 저술들이 등장하는 의미를 적극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유중교의 예 관련 저술을 연보를 토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1]

유중교의 본관은 高興, 副學公派의 시조인 瀟의 10세손으로 서울에서 태어났다. 부학공파는 선산이 있는 춘천과 참판 柳榮五가 관직에서 물러나 은거한 가평 일대에 상당한 기반을 확보하고 있었다. 유중교는 5세부터 이항로에게 찾아가 강학하였고 14세에는 김평묵에게 『孟子』를 배웠다. 조부인 유영오는 김평묵을 초빙하고 書館을 짓는 등 유중교의 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이러한 공부를 토대로 18세에는 『帝王承統考』를 편집하고 21세에는 『宋元華東史合編綱目』의 편찬을 시작하는 등, 학문적으로 두각을 나타냈다.

1866년 병인양요가 발생하자 이항로는 조정에 나아가 척화를 주장했고, 이때 유중교가 스승을 모시고 도성에 머물렀다. 1868년 3월 이항로가 사망하자, 유중교는 스승을 위한 師服으로 心喪 3년을 행했다. 이 때 저술한 「先師李先生喪持服儀節」은 衣服・飮食・居處・哭臨・會集・期限으로 항목을 정하여 스승의 상례 관련 의절을 정리한 것이다. 조선후기 道統과 학맥이 중시되면서, 스승에 대한 의리를 드러내는 師服에 관해서도 여러 논의가 이루어졌다.[12] 유중교는 陶庵 李縡의 『四禮便覽』을 근거로 사복의 弔服加麻를 白布道袍・白布帶・白布巾에 한가닥 삼으로 만든 環絰을 두르는 형식으로 정했다. 이 방식은 『사례편람』에서 尤

11) 이 절은 『省齋集』 부록의 연보를 토대로 하였으므로 따로 주를 달지 않았다. 연보에 등장하는 저술은 모두 『省齋集』 권45-46, 「柯下散筆」에 수록되어 있다.

12) 정길연, 2012 「艃齋 田愚의 師服說의 淵源과 意義」 『인문학논총』 30; 김윤정, 2013 「18세기 師服의 성격과 실제: 양응수의 「축장일기」를 중심으로」 『국학연구』 23.

庵 宋時烈의 예설을 인용한 것으로 白布深衣·緦絰帶·白巾을 착용하는 南溪 朴世采의 사복설과는 차이를 보인다.[13] 장례 후에는 조복가마를 벗고 마음으로 슬픔을 다하는 심상 3년을 사복의 기본으로 정했다.[14]

1869년 2월,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따라 迷源書院이 훼철되자, 고을 사람들과 함께 서원터에 단을 쌓아 제사를 올리고 강회를 계속했다. 미원서원은 1661년(현종 2) 趙光祖와 金湜을 제향하기 위해 건립되었고, 1668년(현종 9) 金堉, 1694년(숙종 20) 南彦經, 1734년(영조 10) 李濟臣, 1792년(정조 16)에 金昌翕이 추가로 배향되었다. 국법에 따라 서원이 철폐되자 위패를 서원터에 묻고 단을 만들었는데, 서원의 원래 위차에 따라 6개의 位를 마련했다. 단이 완성되자, 朱子가 滄洲精舍에서 거행한 釋菜禮에 따라 글을 지어 연유를 神明에게 고했다. 매 월 朔望에 焚香禮를 거행했고, 계절의 첫달[四孟朔] 講會日에는 모두 모여 展謁禮와 講禮를 행했다. 해당 의례가 「迷源書院撤享後設壇儀節」로 정리되었다. 이러한 방식은 국가의 서원철폐령에 따르지만, 서원이 갖고 있는 교육과 제향의 역할을 지속하려던 향촌 사족들의 대응책으로 보인다.

또한 書社의 건립을 통해 서원에서의 교육 기능을 계승하고자 하였다.[15] 미원서원이 철폐된 후 2달만인 1869년 4월에는 자신이 거주하는 가평 한포정사 근처에 漢浦書社를 짓고 朱子의 滄洲精舍 의례를 모방하여 旬講과 四孟朔의 강회를

13) 김윤정, 위의 논문, 474-475면.

14) 유중교는 小註를 통해 程子와 張子 등은 심상의 기한에 차등을 두었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의절의 本文을 심상 3년으로 정하고, 孔子와 朱子, 退溪와 栗谷의 문하에서 행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省齋集』 권46, 「柯下散筆·先師李先生喪持服儀節」 "心喪盡三年. 【據禮經常制及孔門諸子, 朱門黃勉齋·曾光祖, 我東退·栗兩門諸公所行. 盖程·張諸賢稱情降月之論, 固不可廢. … 觀泗上諸子通行三年則可知矣】"). 그러나 栗谷 李珥는 차등설을 주장했고, 송시열과 이재 역시 차등설을 따랐으므로 유중교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19세기 肅齋 趙秉悳과 全齋 任憲晦, 艮齋 田愚 등의 심상 3년 주장과 더불어 당시의 사회상을 반영하는, 즉 관직에서 유리된 양반들의 정체성 확인을 위한 적극적인 의례 실천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5) 書社는 중국 고대에 스승이 생도들을 가르치던 곳으로 인식되었는데, 서원과 같이 독자적 교육기관이 아닌 개인 서재로서의 성격을 가진 소규모의 강학처라 할 수 있다. 서원 훼철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직면하여 서원을 대신하는 공간으로서의 위상을 갖게 되었다(김대식, 앞의 논문, 154면).

행했다.[16] 또한 근처에 觀鄕臺를 짓고 향음주례를 연습했는데, 이항로의 장자인 槐園 李埈이 지은 『飮禮考訂』을 참고하여 笏記를 만들고 銘을 지었다. 유중교는 당시 향음주례를 행하는 것을 "온 세상이 다 머리를 풀어 헤치는데, 나 홀로 章甫를 쓴다."라고 비유했다. 즉, 중화의 문명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의례의 실천을 통해 춘추의리를 지키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1870년 1월에는 「事親三儀」를 지었는데, 부모를 섬기는 3가지 의례로서 아침 저녁으로 문안하는 의절[晨昏定省儀], 삭망에 배알하는 의절[朔望參謁儀], 계절마다 장수를 축원하는 의절[時節上壽儀]을 기록하였다. 이 의절들은 『家禮』에 수록된 司馬光의 「居家雜儀」에서 거론되었는데, 유중교는 구체적인 행례 절차를 보충하고 參謁位次圖를 첨부하여 실제 사용하는 의절로 완성시켰다. 5월에는 이항로의 禫祭를 마친 후 遺稿와 遺墨 등을 보존하는 遺室을 마련하고 배알하는 의절을 정하여, 「華西先生遺室措置儀」를 지었다. 또한 2월에 母喪, 윤10월에 父喪을 당하여 『家禮』에 따라 상례를 치렀고, 이후 돌아가신 부모의 遺事를 정리하였다.

1876년 개항이 이루어지자 유중교는 "오늘 우리나라에 깃들어 있던 華夏의 人道가 모두 무너져버리고 천지가 어둡고 혼란한 곳으로 빠져들 것이다. 어느 청산에 우리가 스스로를 깨끗이 지키고 도리를 다 할 곳을 마련해야 할지 모르겠구나."라고 말했고 그해 5월 가평 玉溪 하류의 紫泥臺로 거처를 옮겼다. 1879년 9월에는 紫陽書社를 짓고 예를 익히는 장소인 先月臺를 마련하여 강학을 계속하였다. 또한 자양서사 中堂의 북쪽 시렁 아래에 龕室을 설치하여 朱子·尤庵·華西 3선생의 영정을 봉안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강학 중심의 서사에 제향의 기능이 포함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17]

---

16) 『省齋集』 권46, 「柯下散筆」의 「栗谷全書諸生相揖儀附注」, 「弟子贄見先生禮」, 「書社習禮節次」, 「書社旬講儀」, 「四孟朔會謁先師及就位儀節」, 「書社禮食儀」는 모두 서사에서의 행례 의절이다. 「書社禮食儀」는 後識에 따라 한포서사 시기인 1873년에 완성한 것임을 알 수 있지만, 나머지 의절들의 저술 시기는 확정할 수 없다. 하지만 한포서사에서 旬講과 四孟朔會를 시행하면서 의절들이 마련되었을 것이고, 다른 의절들의 정비도 이 시기에 행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17) 구완회, 앞의 논문, 289-290면.

1881년 유중교는 영남 유생 李晩孫의 嶺南萬人疏를 지지하며 김평묵과 함께 關東儒疏를 올렸다. 상소의 배후로 지목된 김평묵은 유배형에 처해진 반면, 유중교에게는 여론 무마를 위해 관직이 제수되었다. 그는 곧바로 설악산에 들어가 은둔하였는데, 다음해 병으로 인해 산에서 나와 선산이 있는 춘천 柯亭에 자리를 잡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유중교는 다시 畿內에 들어가지 않고, 가정에 머물면서 새로운 예교질서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그는 "士의 처세는 마땅히 道와 屈伸을 함께 해야 하니, 지금은 오로지 의리에 입각하여 자신의 도를 지켜 목숨을 바쳐 도를 구해야지, 은혜를 탐하여 분별없이 나아가 천하의 법도를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향촌에 은거하여 도를 지키는 방법을 모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柯亭書社를 열어 강학을 계속하는 동시에, 가정에 세거하는 고흥유씨를 결집시키는 의례에 주목하였다. 1882년 10월에는 선조의 묘제에 참석했는데, 笏記를 수정하여 예의를 갖추고자 하였다. 1883년 9월에 『高興柳氏宗法』을 짓고, 會族禮를 행했다. 종족이 모여 사는데 필요한 宗法을 정하고, 門長의 명에 따라 掌議와 執禮를 두어 종중 일을 맡게 했다. 종법을 통해 족보를 명확히 하고, 조상 묘를 받들며, 종족을 거두고, 후진을 가르치는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異端邪說에 흔들리지 말고 外夷의 음란한 풍속에 물들지 말라는 경계도 포함되어 있었다. 1886년에는 『高興柳氏宗法』을 확장시킨 『柳氏家典』을 지었는데, 正倫理 · 奉先 · 事親 · 御家 · 居鄕으로 항목을 세웠다. 處世를 포함하고자 하였으나, 완성하지는 못했다.

가정에 머문 지 7년 만인 1889년 8월에는 堤川 長潭으로 이주했다. 유중교는 춘천이 京城과 가까워 날마다 소인배들이 왕래하는 것을 보고 매우 불쾌하게 여겨 산천이 깊은 장소로 거처를 옮겼다. 이곳에서 강학을 계속하는 동시에 향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예교를 실천하는데 주목하였다. 『堤川長潭里立契約束』은 장담리 사람들이 契를 함께 운영하는 규정으로, 1891년 봄에 저술한 『講信儀』가 부록되어 있다. 강신의는 계원들이 봄과 가을에 모여 계의 일을 처리하고 술과 음악을 즐기는 의식이었다.[18] 또한 주나라 제도에 따라 民社를 세우고, 土神祭

시행을 위한 의절을 마련했다.

1891년 4월에는 精舍 앞의 시냇가에 단을 쌓고 백여 명이 모여 향음주례를 행했다. 이 때 기존의 笏記를 한층 보완했고, 서사에서 행하는 향음주례의 준비와 진행 과정을 설명한 「飮禮約束」을 지었다.[19] 2년 뒤인 1893년에 사망함으로써 그가 지향한 예교질서와 춘추대의의 실현은 완성되지 못했다. 그렇지만, 유중교의 족질 유인석이 1895년 윤5월 2일 제천의 장담서사에서 향음주례를 거행하며 을미의병을 결의한 것은 유중교의 예교가 화서학파의 의병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20]

유중교는 서원 철폐 이후 書社를 중심으로 예의 강학과 실천을 위한 의절들을 저술했다. 고흥유씨의 세거지인 가정으로 이주하면서, 문중 중심의 의절을 통해 친족과 향촌 공동체의 교화를 시도하였다. 이후 예교의 실현을 위해 도성과 멀리 떨어진 제천 장담으로 이주했고, 契를 중심으로 하는 향촌의 예교에 주목하였다. 사대부 유학자로서 임금에게 춘추대의를 지킬 것을 간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신의 집안과 종족 그리고 학교와 향촌을 중심으로 의례를 재정비하여 도학을 실천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2) 禮敎의 실천과 성격

유중교의 예 관련 저술은 외세의 침입과 서구 문화의 유입이라는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현실적 목표를 갖고 있었다. 유중교는 의례의 실천과 예교의 확립을 통해 유교적인 의리를 고수함으로써, 오랑캐를 물리치고 춘추대의를 보존하고자 하였다. 그가 『가례』를 강학하면서 제자들에게 던진 첫 번째 질문은 예를 잃어 오랑캐가 되는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는 것이었다.[21] 이러한 문제의식

---

18) 강신의는 이이가 해주에서 행한 「社倉契約束」에 포함되어 있다(『栗谷全書』 권16, 「社倉契約束」). 다른 용례를 찾을 수 없으므로, 유중교가 「사창계약속」을 근거로 했다고 볼 수 있다.

19) 연보에 기록된 「음례약속」은 『省齋集』 권46, 「柯下散筆」의 「書社飮禮約束」으로 추정된다.

20) 구완회, 1997 『韓末의 堤川義兵: 湖左義陣 硏究』, 집문당, 58-61면.

21) 『省齋集』 권34, 「講說雜稿 · 家禮講義發問」 "程子嘗言, 禮一失則爲夷狄, 再失則爲禽獸. 禮之於人, 其所關若是其大, 何也? 所謂一失再失, 當何以分看? 以事目言, 則一二事失禮, 遂喚

은 예를 실천함으로써, 오랑캐와 구분되는 중화의 문명을 지켜내야 한다는 강한 경계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고례를 회복하는 것이 오랑캐의 제도를 물리치는 방책이라고 인식하였다. 1884년 윤5월 19일 고종이 단행한 衣制 개혁은 심각한 의리의 훼손으로 간주되었다. 유중교는 의복이란 貴賤·吉凶·男女·夷夏를 구분하는 것으로, 복식이 바뀌면 명분이 바뀌고 명분이 바뀌면 의리는 홀로 설 수 없다고 보았다.[22] 이러한 견해는 유교적 의리를 그대로 담고 있는 고례의 복식에 대한 관심으로 표출되었다. 그는 深衣와 喪服을 근거로 周나라 예복인 端服의 제도를 추론하여 공·사와 길·흉에 합당한 복식을 정비하고자 「兩服通解」를 저술했다.[23] 주나라의 복식을 회복함으로써, "역대 오랑캐 제도의 잘못을 한꺼번에 씻어버릴 수 있다."고 확신했다.

유중교가 춘추대의의 근본으로 인식한 예교의 실천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첫째, 書社가 예교 공동체의 구심점으로 확립되었다. 국가의 서원철폐령이 시행된 이후, 서사는 서원을 대신하여 향촌 사족의 교육과 학문을 담당했다. 유중교는 서사의 교육에서 예학을 중시하였는데, 경전의 이해를 추구하는 강론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行禮를 연습하는 習禮에 주목했다.

유중교는 서사에서 習禮를 실천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고려했다. 먼저 예를 익히는 공간인 臺를 따로 마련하였다. 한포서사의 觀鄕臺와 자양서사의 先月臺, 가정서사의 悅樂臺에서 향음주례 등을 연습했다. 또한 장소와 인원에 구애받지 않는 습례 방식이 적극 활용되었다. 「書社習禮節次」에 의하면 목판에 집의 구조를 그리고 네모 패 수십 개를 만들어 인원과 기물을 표시했다. 笏記에 따라 패

做夷狄禽獸, 似或煞重. 欲別作層節言, 則亦無端的可分段處."

22) 『省齋集』 권32, 「講說雜稿·甲申變服令後示書社諸子」 "夫衣服者, 古昔聖王所以爲文章表貴賤也. 蓋不惟表貴賤, 亦以辨吉凶別男女定夷夏也. 服改則名移, 名移則義不得而獨立."

23) 『省齋集』 권30, 「講說雜稿·兩服通解」 "盖深衣說, 一遵先生之意, … 檃栝爲一章, 而繼之以喪服之說, 名曰兩服通解. … 誠能以李先生深衣之說爲權輿, 而旁推喪服之說, 因二服之制而溯求端服之制, 必得其眞象而措之於公私吉凶之用, 一洗歷代胡制之累."; 정길연은 兩服을 현단복과 심의로 설명했지만(정길연, 2018 앞의 논문, 88면), 이항로의 심의설에 이어 상복설을 서술하였고 이를 통해 현단복의 실체를 밝히고자 했다는 점에서 심의와 상복의 양복으로 보아야 한다.

를 움직여 의절을 행하는 방법으로, 향음주례와 향사례 및 관혼상제 등의 예를 익히도록 했다. 유중교는 이러한 습례의 경우 비록 절하고 읍하는 모습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오르내리고 나아가고 물러나는 절차를 정확히 익힐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방법으로 인식했다.[24]

> 무릇 書社에서 학업을 익히는 사람은 禮學 한 과목도 경학 과목과 짝을 삼아야 하는데, 學宮의 예는 鄕飮酒禮를 가장 중시한다. 먼저 『儀禮』「鄕飮酒禮」 편을 취하여 箋註를 참고하여 상세히 연구하고, 아침저녁으로 한가할 때 종이에 位를 그리고 패를 움직여 예를 행함으로써 의식을 익힌다. … 또 넓은 林園을 택하여 단을 쌓아 位를 표시해 놓고, 열흘마다 오전에는 課書를 齋에서 강독하고 오후에는 여기서 예를 행함으로써 의절과 자세를 익힌다.【飮禮 전체를 서너 부분으로 나누어 한 부분을 행할 때마다 손님과 주인을 교대한다.】 봄가을로 좋은 날을 가려 향당 사람들을 불러 모아 나이, 관작, 德의 순서로 인원을 갖추어 예를 행함으로써 백성을 교화하고 풍속을 바로잡는 옛 성인의 지극한 뜻을 체득한다. 무릇 춘추의 習禮에서 主人이 되는 사람은 같은 書社의 諸子를 모아 賓介와 衆賓을 상의한다.[25]

특히 향음주례의 경우 서사에서 의례를 익힌 후, 실제로 향촌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 의례를 거행하였다. 유중교는 서사에서 행하는 '書社飮禮'로 규정했지만, 향음주례와 동일하게 백성의 교화를 목적으로 하였다. 원칙상 향음주례의 주인은 지방의 수령이고 장소는 향교의 명륜당 앞마당인 반면,[26] 서사음례는 서사에서 예를 익힌 사람이 주인이 되어 별도의 공간에 단을 만들어 거행하였다. 유중교는 '서사음례'라고 칭하고 습례임을 강조함으로써, 이러한 차이에서 오는 논란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27]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서사를 중심으로, 사족이

---

24) 『省齋集』 권46, 「柯下散筆 · 書社習禮節次」 "書社置一木板, 依古屋制, 刻畫爲位, 塡書其名【房室 · 廂序 · 門庭 · 陳階之類】, 就加黃漆. 又用牙骨之屬, 爲方牌數十以隨之, 暇日習鄕飮 · 鄕射及冠昏喪祭等禮. … 又寫各員之號於牌面【主人 · 賓 · 贊之類, 各註服色】, 乃呼笏記, 運牌行儀. … 鄕社習禮, 旣未能備制起屋, 則莫便於築壇行之, 但此非備員, 無以行之. 且家中之禮, 又有不可盡習者, 故特備此一條. 盖拜揖步趍之容, 固不可見, 而其升降進退之節, 則可因此而了然矣."

25) 『省齋集』 권46, 「柯下散筆 · 書社飮禮約束」.

26) 김문식, 2016 「茶山 丁若鏞의 鄕禮 이해」 『한국실학연구』 31, 304면.

27) 유중교의 『사례홀기』에 포함된 향음주례와 사상견례 역시 습례를 위한 것임이 명시되었다. "지금 향사습례에서는 이 절차를 사용하지 않는다."거나 "가숙의 습례를 위한 자료"

주도하는 향촌 예교의 실천이었다고 할 수 있다.

서사의 습례에서 의례의 절차를 간략히 적은 홀기는 필수적인 자료로 활용되었다. 유중교의『四禮笏記』는 서사의 습례에 사용되던 홀기로 추정된다. 유중교는 향음주례·사상견례·관례·혼례 외에 나머지 홀기도 만들고자 했으나 완성하지 못했다. 이후 유중교의 덕을 사모하던 판관 禹炳烈이 4개의 홀기를 모아『사례홀기』라고 이름을 붙였다.[28]

향음주례 홀기는 1869년 4월 한포서사 옆에 觀鄕臺를 짓고 향음주례를 익힐 때 새로 만들었고, 1891년 장담에서 향음주례를 행하면서 보충하여 완성한 것으로 보인다.[29] 사상견례 홀기 역시 1869년 4월에 처음 마련되었다. 또한 서사의 구성원들이 관례를 시행할 때 서사에서 습례한 관례의 의절을 따르도록 했다는 점에서 관례 홀기의 존재를 추론할 수 있다.[30] 서사의 습례 지침서로 홀기가 저술되었고, 이러한 홀기가 서사 공동체의 의례를 통일시키는 역할을 했을 것이다.[31]

또한 유중교의 예서인『祭禮通攷·服制總要』는 서사의 문인들에 의해 판각되고 유포되었다. 이 책은 제례절차와 상복제도를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표의 형식으로 구성하였다. 발문을 쓴 유인석은 예를 익히지 못하고 서적을 구비하지 못하는 향곡 사람들을 위한 要覽으로, 간략하면서도 꼼꼼하여 世敎

라는 설명을 확인할 수 있다(『四禮笏記』「鄕飮酒禮」"謀賓介. 主人就鄕先生, 謀賓介.【今鄕社習禮, 去此一節.】"; 「士相見禮習儀」"【… 故以爲家塾習禮之資云.】").

28) 『四禮笏記』「四禮笏記合刊序」"我先師省齋先生, 樂節禮樂, 於聖賢制作, 洞究其源流, 會之於心, 而著之於日用矣. 於是爲行之於家, 而修整冠·昏禮笏記, 爲習之於塾, 而修整士相見禮·鄕飮酒禮笏記, 將盡修其餘, 而未及也. … 平山禹判官炳烈, 慕先生之德, 常以不及門爲深恨, 旣於文集刊事, 煞用心力, 而又收合此笏記, 名曰四禮笏記."

29) 『省齋集』부록 권1,「年譜」"己巳【先生三十八歲】… 使金晉壽築觀鄕臺. … 會徒友習鄕飮酒禮, 用槐園所輯飮禮考訂, 而增删爲笏記. … 辛卯【先生六十歲】… 四月, 行鄕飮酒禮于溪壇. 精舍前臨溪築壇, 春秋講習, 會者每至百餘人, 就舊定笏記, 益加潤色."

30) 『省齋集』권11,「往復雜稿·與李秀直【浩○己巳四月三】」"士相見禮, 新成笏記. 伯賢錄往一本, 可令同社冠童, 依向日習三加禮法, 一爲行之. 看有未善處, 斤正回敎也."

31) 김대식은 관혼상제 중 관례에만 화서 문인들이 교통하고 있다고 보았지만(김대식, 앞의 논문, 125면), 서사에서의 습례에 관혼상제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가례와 향례를 포함하는 의례 공동체의 성격을 고려할 수 있다.

에 도움이 되는 책으로 평가했다.[32] 家禮에 속하는 제례와 상례에 관한 예서이지만, 서사를 중심으로 향촌 공동체의 시행을 목적으로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제례통고」는 喪禮에 속하는 虞祭·卒哭·祔祭·小祥·大祥·禫祭·吉祭와 제례에 속하는 時祭·忌祭·墓祭를 합하여 10단으로 나누고, 두주 형식으로 祭日·前期告·齋戒·陳設 및 祭後 節次까지 총 26항목을 횡으로 기록하였다. 10종의 제사 의례를 한 눈에 파악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복제총요」는 本宗正服圖를 통해 자기를 중심으로 고조부터 현손까지의 복제를 명확히 정리했고, 그 외 논란의 소지가 있는 繼母, 庶子, 爲人後者 등의 복제는 따로 설명했다. 말미에 外親服, 妾服, 嫁出母服, 被養服, 同爨服을 부록하였다. 매우 간단명료한 형식이지만, 그만큼 유중교의 예설이 응집된 저술이라 할 수 있다.[33]

둘째, 친족 공동체에서 향촌 공동체로 예교의 확장이 진행되었다. 유중교는 가정으로 이주한 후 문중을 대상으로 하는 예교에 주목하여 「柳氏家典」을 저술했다. 「유씨가전」은 문중의 예법이지만, 친족 공동체를 넘어 향촌 공동체의 예교를 포함하는 성격을 갖는다. 가정이 고흥유씨의 세거지로서 문중의 예교가 곧 향촌의 예교라는 점뿐만 아니라, '居鄕'이라는 항목을 통해 향촌에서의 의례 실천과 질서 유지를 중시했다. 친족질서가 향촌질서로 자연스럽게 확장되는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먼저, '正倫理'를 첫 번째 항목으로 삼아 종법을 통한 문중의 질서 확립을 최우선으로 하였다. 宗子의 지위를 강조하여 종자와 종부에게 齊衰 3월복을 입도록 했고, 傳重의 순서와 立後의 원칙, 형제·자매·적서의 순서 등을 명확히 밝혔다. 특히 첩자의 承重을 인정하면서, 첩자가 있음에도 입후하는 것은 천륜을

32) 『祭禮通攷服制總要』 "右祭禮通攷服制總要, 省齋先生所爲, 盖爲鄕曲不閒禮, 不具書籍者, 備其要覽也. 誠約而密矣, 使人得此而祭無差儀, 服不眩制, 有以開貿俗而用平於人情天理之宜, 則其於世敎, 豈亦小補者哉. 書社少友爲之鋟布, 以卒先生惠人之意, 其意甚善矣. 丙午陽月. 先生從姪柳麟錫在斗尼山中書."

33) 유중교는 자신이 적확하다고 생각하는 예설을 선택적으로 수록하였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처를 위한 상복을 不杖朞로 정한 것은 송시열과 이재가 杖朞를 주장한 것과 차이가 있었다. 유중교는 『의례』와 『예기』 등을 토대로 송시열과 이재의 예설을 비판했고(『省齋集』 권35, 「講說雜稿·父在爲妻不杖禮攷證」), 자신의 주장을 「복제총요」에 수록하였다.

끊고 임금을 속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얼을 지나치게 차별하여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조선의 비루한 풍속으로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34] 이러한 인식은 그의 저술인 「傳重說」과 「記古今嫡庶之禮」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었다.[35]

유중교의 서얼에 대한 포용적 입장은 기호학파의 학문적 연원과도 닿아있었다. 이이는 서얼 허통을 주장했고, 김장생과 송시열은 서자 승중을 인정했다. 이들은 고례와 국제를 따른다는 원칙론을 강조했지만, 서얼에 대한 현실적 차별은 그대로 유지되었다.[36] 유중교 역시 "크게 구분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구별이 없었던 적은 없다."라고 하여 첩자에 대한 차등을 인정했고, "첩자가 적자를 높이는 것은 그 어머니를 높이는 것"으로 규정했다.[37] 서얼에 대한 신분적 차별은 인정하지만, 혈연과 천륜에 합당한 지위와 역할을 명시한 것은 서얼을 친족 내부로 포섭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서얼까지를 포함하는 문중의 결집은 새로운 생존전략이 요구되는 시대적 변화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奉先'은 사당을 세우고 제사를 지내는 의례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의절은 『家禮』를 토대로 『喪禮備要』와 『四禮便覽』에서 보충하였는데, 變禮의 경우에는 『禮疑類輯』과 『家禮增解』를 참고하여 적확하고 근거가 있는 것을 따랐다. 제사를 대중소로 구분하여 大祭는 四時祭, 中祭는 忌祭와 墓祭, 小祭는 正至朔望參·俗節·薦新·告事, 그 외 음식을 올리지 않는 晨謁과 出入告를 포함하여 총 9개의 봉선은 반드시 거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38] 그 외 토지신에 대한 제사와

34) 『省齋集』 권45, 「柯下散筆·柳氏家典·正倫理第一」 "族人之於宗子, 有君臣之道. … 擧族爲之服齊衰三月. … 凡宗子之妻爲主婦, 與宗子配位, … 爲之服齊衰三月. … 適子死而有不可繼序之故, 則立嫡妻所生第二長者爲適子, 但名次適, 不得用適子正禮. … 嫡妻無子而有妾子, 亦立之, 用次適禮.【今士大夫家無適子有妾子者, 例以適庶俱無子告君, 而取族人爲後. 夫子之於父, 父之於子, 尊卑雖殊, 俱是天親, 豈可以貴賤之故, 而自絶其親, 又以欺其君乎? … 】 ○嫡妾俱無子, 則取族人爲後. … 凡此皆同氣而分者, 其親親之恩則自不敢有隆殺也.【 … 於庶屬則常患分別之太遠, 而遂致恩情之踈薄. 庶弟不敢以兄稱兄, 庶子不敢以父稱父. … 此是吾東夷陋之大者, 切宜痛革之.】"

35) 『省齋集』 권35, 「講說雜稿·傳重說」; 「記古今嫡庶之禮」.

36) 박종천, 2014 「조선후기 성호학파의 입후설과 친족의식」 『민족문화연구』 65, 262-267면.

37) 『省齋集』 권45, 「柯下散筆·柳氏家典·正倫理第一」 "雖曰不遠別, 而未嘗無別, 盖妾子之尊適子, 所以尊其母也."

神主의 형식, 제사가 겹치는 경우 輕重의 구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혔다.

'事親'은 「사친삼의」에서 다룬 晨昏定省, 朔望參謁, 上壽禮의 의절을 중심으로 했다. 그 외 곁에서 모시는 의절, 喪具를 미리 준비하고 부모의 施藥에 정성을 다하는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39]

'御家'는 집안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자손의 교육, 의복·음식의 절도, 금지조항과 처벌조항 등 구체적인 사항을 수록하였다. '정윤리', '봉선', '사친'은 원칙적으로 '어가'에 포함되지만, 중요한 내용이므로 먼저 서술하였음을 밝혔다. '정윤리'가 大典이고, 그 방도로서 '봉선'과 '사친'이 大本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 외 관리를 잘 대접하고 조세 납부를 먼저하며 조세 감면과 부역 면제를 도모하지 말하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었다.[40]

'居鄕'의 경우는 지방관을 존경하는 것을 첫 번째 의리로 삼고, 고을사람들[鄕人]과의 예절과 유대를 중시했다. 고을백성[鄕民]에 대해서는 보살피는 마음으로 가난과 곤경을 구제해주어야 한다고 보았다. 民社를 통한 제사, 향교와 서원의 활동, 향약과 향음주례, 향사례의 실천 등을 포괄하였다.[41]

---

38) 『省齋集』 권45, 「柯下散筆·柳氏家典·奉先第二」 "凡禮文當以朱子家禮爲正經, 而文略禮闕處, 參用沙溪先生喪禮備要·陶庵先生四禮便覽行之. 【至遇變禮, 取朴謙齋禮疑類輯·李鏡湖家禮增解等書, 詳考諸賢說, 擇其的確有據者從之.】 … 奉先之禮, 大祭祀一, 四時正祭也. … 中祭祀二, 忌祭及墓祭也. 小祭祀四, 正至朔望之參, 俗節時食之獻, 恒獻也, 有新物隨得而薦, 有大事因告而奠, 無時之獻也. … 其無薦而謁, 不奠而告者二, 晨謁及出入告是也. 此九者, 雖禮有隆殺, 物有豊略, 而義各有主, 情各不同, 不可廢一而不擧也."

39) 『省齋集』 권45, 「柯下散筆·柳氏家典·事親第三」 "凡子事父母, 晨昏行定省之禮, 就養竭其誠, 朔望行參謁之禮, 尊奉極其敬, 四時節序及家慶, 行上壽之禮, 燕饗盡其樂, 此三者其大節也. … 凡在父母之側, 以拱立爲恒節. … 親年旣高, 不可不思不虞之備. … 親若有疾, 當盡致憂之道."

40) 『省齋集』 권45, 「柯下散筆·柳氏家典·御家第四」 "大凡御家之道, 正倫理篤恩義, … 是第一大典, 爲家長者, 宜以此爲職事, 蚤夜惕念之, 正倫理說, 畧具在首章. 正倫理之道, 以奉先【主人是宗子則宜自爲己職, 是支家則以事宗子助廟事爲己職】·事親 【主人有母焉, 當自盡事親之禮, 若身老爲子孫所養, 則爲子孫者自宜盡其職】 爲大本, 說亦具上章. … 待官人, 必加於凡民. … 及不得爲私田圖減稅, 不得爲私屬圖免役."

41) 『省齋集』 권45, 「柯下散筆·柳氏家典·居鄕第五」 "居鄕之道, 以尊奉官長, 爲第一義. … 接鄕人之節, 於同里居者, 宜盡情致款如親戚. … 凡接鄕民, 一例眷愛, 以示同胞之情, 其貧窮困苦者, 尤加矜恤. … 凡所居里中, 宜立民社. … 鄕約者, 昔賢修身正俗之美規. … 鄕飮酒禮, 春秋擧行, 儘有所補. … 鄕射禮者, 因飮酒之禮, 講習射事, 以觀德行也."

이후 장담 거주시에 저술한「堤川長潭里立契約束」은 예교의 대상이 향촌 공동체로 확대되었음을 보여준다. 入契의 대상은 장담리에 거주하는 사람 전체이지만, 上契와 下契로 구분하였다. 약간의 재정을 조성하여 계를 운영하고, 상계는 하계를 돕도록 하여 향촌 공동체의 경제적 안정에도 주목하였다. 塾舍를 마련하여 봄과 가을의 계모임을 열었고, 평소에는 계원 자손의 교육 공간으로 사용하였다. 숙사의 교육에서는 小講會, 大講會를 통해 학업의 진도를 살피고, 향음주례, 향사례 등의 예를 익히도록 하였다.[42]

'同契之人' 즉 계를 같이 하는 사람은 조상 제사에 정성을 다하고, 부자·부부·형제 간의 도리를 지킬 것을 명시했다. 관혼상제에서『家禮』를 준수하고 가풍을 더럽히는 외국의 난잡스런 풍속을 금지하였다.[43] 이러한 규정은 집안의 예교가 향촌 예교의 토대가 됨을 보여준다. 또한 주나라 제도인 民社를 만들어 봄가을로 토지신에 제사를 지내도록 했다. 그 외 근거가 없는 城隍, 神堂 등의 제사는 모두 금지하였다.[44] 민사는「유씨가전」의 '거향'에서도 거론된 것으로, 유중교는 민사를 유교적 향촌질서의 중요한 의례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향촌 예교의 강조는 고종의 개화 정책에 반대하여 향촌 사족 중심으로 유교적 질서를 확립하려는 시대적 목적과 함께하였다. 16세기 향촌의 사족지배체제가 확립되면서 사족 중심의 鄕禮가 정비되었다면, 18세기에는 수령이 중심이 되는 국가 주도의 향례로 변화되었다.[45] 19~20세기에는 사족이 국가 주도의 향촌 예교에 협력함으로써, 향촌에서의 사회문화적 주도권을 확보하고 사회적

42)『省齋集』권46,「柯下散筆·堤川長潭里立契約束」"一凡同里人, 通上下共一契. … 一里中宜設置一塾舍, … 每歲春秋, 定一日作契會. … 一契員各出財本, 豊約有差, 委司貨春秋出納, 以備公私吉凶應給之需. … 一凡同契之家, 宜各勤敎子孫. 兒生七八歲, 卽入塾舍, … 每月三旬, 作小講會, 春秋一日, 作大講會, 以攷其進業次第. 又於暇日, 習鄕飮·鄕射等禮, 以資觀感."

43)『省齋集』권46,「柯下散筆·堤川長潭里立契約束」"一凡同契之人, 咸宜勉修家行, 奉先盡誠, 養親盡孝, 夫和婦順, 兄友弟恭, 各思所以不墜先訓. 冠昏喪祭, 謹遵朱文公家禮, 絶不染外國雜俗, 以汚家風."

44)『省齋集』권46,「柯下散筆·堤川長潭里立契約束」"一成契後, 卽以契長命, 擇地築壇, 祠本里土神, 卽周制所謂民社也. … 餘外鄕里不經之祀, 如城隍·神堂·巫覡·祈禳之類, 並不宜行."

45) 김현수, 2010「17世紀 鄕村敎化論과 鄕禮 認識」『동양고전연구』39, 205면.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례들이 등장하였다.[46] 그러나 유중교는 국가보다는 사족이 주도하는 서사 중심의 향례를 강조하였다. 지방관을 존중하고 조세를 납부하는 사족의 의무를 중시했으며 서사의 향음주례를 '習禮'로 낮추어 표현했지만, 향촌의 예교에서 국가 정책에 좌우되지 않고 도학의 가치를 우선하는 경향을 살펴볼 수 있다.

3. 「方喪儀節」의 성격과 내용

1) 「방상의절」의 구성과 성격

「방상의절」은 국가의 공적인 상장례인 국휼의 절차에서 온 나라의 신하와 백성[臣民]이 행하는 의례를 정리한 것이다.[47] '방상'은 『禮記』 「檀弓」의 "임금을 섬기는 데는 直言으로 面爭할 수는 있으나 숨김은 없어야 하며, 좌우에서 돌보면서 죽을힘을 다하여 服勤하고, 방상 삼년을 입는다."에서 인용한 것이다.[48] '방'은 '견준다'이므로 부모의 상에 견주어 동일하게 임금을 위해 삼년상을 치르는 것을 의미한다.

유중교는 국휼 시 신민이 행해야하는 의절을 매우 상세하게 분류하고, 그대로 따를 수 있도록 간략하게 정리하여 「방상의절」을 완성했다. 정확한 저술 시기는 확인되지 않지만, 여러 차례 국휼을 치르면서 行禮에 참고할 의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유중교는 1849년 憲宗, 1868년 哲宗, 1878년 철종비 哲仁王后, 1890년 翼宗妃 神貞王后 등의 국휼에서 望哭禮를 행했다. 1882년 임오군란 시 명성황후의 실종으로 국상이 선포되자 유중교는 관아로 달려가 망곡례를 행했는데, 와전된 것임을 확인하면서 상복을 입지는 않았다.[49]

---

46) 박종천, 2018 「19-20C 청도 밀양박씨의 향약과 계」 『종교와 문화』 34, 131-132면.

47) 「방상의절」은 『省齋集』 권46, 「柯下散筆」에 수록되어 있다. 「방상의절」의 내용을 인용할 경우에는 따로 주를 달지 않았다.

48) 『禮記集說』 권2, 「檀弓上」 "事君有犯而無隱, 左右就養有方, 服勤至死, 方喪三年."

49) 『省齋集』 부록 권1, 「年譜」.

국휼 시 신민의 의례는 15세기『國朝五禮儀』에도 일부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매우 소략하여 행례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했고, 이황, 김장생, 송시열 등 많은 학자들이 관련된 예설을 남겼다. 영조대『國朝喪禮補編』이 편찬되면서 새로운 규정이 추가되었지만, 여전히 행례 과정에서 보충할 부분이 많았다. 따라서 19세기에도 국휼에 관한 논의들은 계속되었다.[50]

유중교의「방상의절」은『國朝喪禮補編』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여러 학자들의 주장과 자신의 의견을 보충하여 행례에 참고하는 의절로서의 실용성을 강조했다. 같은 시기 예서의 '국휼' 관련 항목은 예문답과 예설을 집성한 형식이 대부분인 것과는 차이를 보인다.「방상의절」이 갖는 실천적 의절로서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휼 절차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18세기『예의유집』,『가례증해』 등 집대성된 거질의 예서들이 편찬되면서, 다양한 예설들을 검토하는 작업이 가능해졌음을 의미한다. 유중교는 이러한 예서들을 참고하여 합당한 예설을 선택하고, 행례를 위한 세부적인 부분을 보완하였다. 또한 신분에 따른 상복을 服制圖와 變服圖로 제시하여 행례의 편의를 도모하였다.『국조상례보편』에도 신분에 따라 복제를 도식화하였지만, 성복 후 상복의 變除 과정은 절차에 따라 구분하지 않고 '복제' 항목에 함께 기록하였다. 하지만,「방상의절」은 절차에 따른 상복의 변제를 變服圖로 구성하여, 각 항목 아래 첨부함으로써 활용도를 높였다.

둘째, 향촌에서의 의례를 중심으로 사족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자 했다.『국조상례보편』은 국휼의 진행과정에서 백관들의 의례를 주로 규정했던 만큼,「방상의절」도 국휼의 절차에 따른 백관들의 의례가 중심이 되었다. 그러나 유중교는『국조상례보편』에서 자세히 규정하지 않은 향촌에서의 의례를 보충하는 데 주목했다. 향촌의 관아를 중심으로 지방관의 의례를 서술하고, 여기에 참여하는 鄕人

50) 18세기 예서에서 '국휼' 관련 항목이 대폭 추가되었다. 朴聖源의『禮疑類輯』과 柳長源의『常變通考』 등은 국휼을 항목으로 하여 여러 학자들의 예설을 집성하였다(장동우, 2013「朝鮮時代『家禮』 硏究의 進展」『태동고전연구』 31, 234면). 이러한 흐름은 19세기에도 이어지는데, 丁若鏞의『喪禮四箋』과 許傳의『士儀』에는 '方喪', 洪直弼의『梅山先生禮說』과 田愚의『艮齋先生禮說』에는 '國哀'의 항목으로 나타나고 있다.

들의 의례를 명시했다.

이에 향인을 有爵者, 生徒 등으로 세분하여, 상복이나 곡하는 위치를 차등적으로 규정했다. 또한 국휼에서 素食 등의 일상적인 규범을 실천하는 것은 향촌 사족의 유교적 도덕성을 보여주는 지표가 되었다. 국휼이라는 국가 차원의 의례를 통해 향촌에서의 신분적 차등을 명확히 하고, 예교의 주체로서의 사족의 지위를 강조하고자 하였다.

유중교의 「방상의절」은 총 17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크게 두 영역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앞의 10항목은 국휼의 절차에 신민이 참여하는 의례를 정리한 것이다. 聞喪, 成服, 殯殿禮, 因山, 虞卒哭, 練祭, 祥祭, 禫祭, 祔廟, 忌晨으로 설정된 항목은 『국조상례보편』의 절차와 일치하지 않는다. 국휼 절차를 그대로 나열한 것이 아니라, 신민의 의례에 필요한 내용만을 뽑아 새로운 항목으로 정리한 것이다. 또한 기신의 경우는 『국조상례보편』에 관련 기록이 없지만, 기제는 상례의 나머지라는 인식[51]에 따라 보충한 것으로 보인다. "『國朝喪禮補編』을 인용하고, 註 가운데 증보한 곳은 '按'자를 붙여 구별"하는 방식을 취했다.

뒤의 7항목은 국휼 중 私家의 관혼상제와 家人禮, 鄕黨禮, 學宮禮의 시행을 규정한 것으로, 전체를 한 칸 낮추어 서술하였다. "私家의 예 가운데 행하거나 금지하는 항목을 첨부했고, 아울러 여러 책에서 인용한 것은 출처를 註로 달았다."고 밝히고 있다. 『국조상례보편』 '계령'조에 포함된 사가례와 학궁례에 대한 규정을 토대로 실제 행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추가하여 의절을 완성하고자 하였다.

국휼은 사대부의 가례 실천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는데, 吉한 禮로 간주되는 관례·혼례·제례의 시행은 국휼로 인한 슬픔의 표현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상례 역시 상이 겹쳐 발생하는 竝有喪의 차원에서 논의되었고, 왕에 대한 尊尊과 부모에 대한 親親의 조율이라는 측면에서 복잡하게 전개되었다. 유중교는 이러한 논란들을 제거하고 자신의 예학연구를 바탕으로 명확한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행례를 위한 의절을 완성하였다.

---

51) 『常變通攷』 권25, 「祭禮·忌日·葬前遇先忌」 "朱子曰, 忌者, 喪之餘, 祭似無嫌. 然正寢已設几筵, 卽無祭處, 恐亦可暫停也."

2) 國恤의 절차와 의절

(1) 聞喪은 처음 국휼의 부고를 들었을 때의 의절로서,『국조상례보편』의 '初終', '戒令', '擧臨', '小斂', '大斂'에서 인용하였다. 초종은 햇솜을 코와 입에 얹어 사망을 확인한 후 곡을 하는 절차이다. 유중교는『국조상례보편』의 종친과 문무백관이 淺淡服·烏紗帽·黑角帶 차림으로 궐내에서 擧哀하고, 罷散官·館學生·庶民은 白衣·黑笠 차림으로 궐외에서 거애하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했다. 이후 국휼 절차에서는 시신을 목욕시키고 옷을 입히는 襲을 행하고, 襲奠 후에는 왕과 세자를 비롯한 왕실 구성원들이 자리를 설치하고 곡을 하는 爲位哭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종친과 문무백관 등이 곡하며 왕과 세자를 위로하고[擧臨], 이후 소렴과 대렴의 절차에 참여하는 의절을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유중교가 강조한 부분은 향촌에서의 문상 의례였다.『국조상례보편』의 '거림'조에는 각 도의 使臣과 外官의 의례가 수록되어 있는데, 국휼을 알리는 문서가 도착하는 날 正廳에다 향탁을 설치하고 천담복·오사모·흑각대 차림으로 庭에 들어가 곡하고 四拜禮를 행하는 형식이었다. 유중교는 이 내용에 5개의 按說을 보충하여 행례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비했다.

먼저, 사신은 관찰사와 절도사, 외관은 판관과 각 고을의 수령이고 이들이 의례를 행하는 정청은 客舍의 정청으로 명시했다. 또한 당시 행해지는 방식인 현행례에서는 鄕人 중 官爵이 있는 사람은 외관의 뒤, 유생과 庶民은 문안에 두 줄로 나누어 서서 의례를 행한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관아에서 멀리 떨어진 外村에서는 따로 장소를 정해 모여서 곡하는데, 罪廢者와 부모상이 있는 사람은 공간을 구분하고, 부인은 담 안 구석진 곳에서 곡하도록 했다. 이 경우 주자설에 따라 哭位를 설치하지 않고 절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국휼 중에 경계해야 할 내용을『국조상례보편』'계령'조를 토대로 정리했다. '계령'에서는 公除[52] 전까지 음악을 정지하는데 사적인 음악은 모두 상을 마

52)『국조상례보편』'계령'조에서 公除는 喪期를 以日易月하여 開座·用刑 등의 국정을 재개하는 기점이 되었다. 삼년상의 경우 성복 후 27일이 공제일이 된다(『國朝喪禮補編』권1,「戒令」"公除, 以日易月之制也. 三年二十七日, 杖朞十五日, 朞十三日, 大功九日, 小功五日, 緦三日, 皆自成服日計.").

친 후 사용하도록 했다. 內喪(왕비상)과 小喪(세자상)의 경우 임금의 상기가 끝나지 않았다면, 관아와 서울의 사대부가에서는 음악을 쓸 수 없다고 보았다.

素食과 居處, 詩作 등 일상의 규제에 대해서도 정리했다. 소식의 경우, 송시열이 성복 전에는 육식을 금지한 것을 인용하고, 관작이 높은 사람은 장례 전까지 소식하는 경우가 많았음을 강조했다. 또한 송시열이 국상 시 집에 머무는 것을 미안하게 여겨 龍門精舍에 머문 사례, 이황과 이이는 국상 중 시를 짓지 않았지만, 주자와 송시열은 시를 지은 사례를 제시하면서 적당함을 헤아려 행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일상의 규제는 법제화되지 않았으므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문제로 인식하였다.

(2) 成服은 대상과 내상의 경우 초종부터 6일째, 소상과 소내상(세자빈상)은 4일째 되는 날 상복을 입는 의절이다. 『국조상례보편』 '성복'조에 따라 백관이 成服儀에 참여하고, 實職이 없는 罷散官과 生徒는 각자의 상복을 입고 궐 밖에서 곡하는 규정을 수록하였다. 또한 『국조상례보편』 '복제'조의 상복도식 중 왕실 구성원을 제외한, 종친·문무백관부터 서인·승도까지 9등급에 이르는 신민의 복제를 표로 재구성하였다.

지방의 사신과 외관의 성복 의례는 『국조상례보편』의 '거림'을 인용하였다. 문상 후 6일째(혹은 4일째) 성복하고 정청에 나아가 분향한 후 곡하고 사배하도록 하였다. 역시 향촌에서의 성복 규정을 안설을 통해 보충했다. 첫째, 鄕人의 성복 장소와 시기를 규정했다. 향인 중 관작이 있는 사람은 도성의 궐문 앞에 달려가 哭班에 참여해야 하지만, 늙거나 병들어 달려갈 수 없는 사람은 고을 관아의 뜰에서 예를 행할 수 있다고 보았다. 관작이 없는 사람은 모두 관아 뜰에 가서 행하지만, 갈 수 없는 사람은 마을에서 庶民과 더불어 사적으로 행하는 것을 인정했다. 성복 날짜는 직접 부음을 들은 날로부터 계산하는 것으로, 부음이 전해지는 시간에 따라 지방에서의 성복 일은 차이가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산림으로 자처하는 향촌 사족의 복제를 규정하여 차등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유중교는 "초야 사람으로 관직에 제수되었지만 관직에 나아가지 않고, 평소 유학자로 자처하는 자는 前銜官의 예에 의거하여 상복을 입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繕工監假監役 등에 임명되었지만, 사양하고 나아가지 않았으므로

자신의 상복에 해당되는 문제였다. 원칙적으로 관직을 역임한 것은 아니므로 전함관이라 할 수 없지만, 전함관으로 간주하여 백관과 동일한 상복을 입도록 하였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향촌의 사족 중 백관과 같은 상복을 입는 대상이 확대되었고, 생원·진사·생도나 庶人과 구분되는 상복을 입음으로써 가시적으로 차별적 지위를 드러낼 수 있었다.

이러한 결정은 櫟泉 宋明欽의 예설을 근거로 한 것이었다. 1757년 정성왕후 국휼 시 송명흠과 渼湖 金元行 간의 예문답에서, 김원행은 "선비가 아직 出仕하지 못한 것은 여자가 아직 出嫁하지 못한 것과 같으니, 직명이 이르더라도 감히 그 직명으로 자처하지 않는 것이 義에 맞다."고 하면서도, 조정에서 직명에 따라 내려준 상복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 문의했다. 從祖인 三淵 金昌翕은 상복을 사양하고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논쟁의 여지가 있었지만, 송명흠은 상복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53] 유중교는 경화사족이자 노론의 산림이었던 김원행과 향촌의 사족을 구분하지 않았고, 이 사례를 향촌의 의례로 적극 활용하였다.

(3) 殯殿禮는 발인 전까지 빈전에서 행해지는 의례로서,『국조상례보편』의 '朝夕哭及上食', '朔望奠', '議政府率百官進香儀'를 인용하였다. 梓宮을 안치한 빈전에서는 매일 아침저녁으로 奠과 哭 및 上食이 진행되었고, 매월 1일과 15일에는 삭제와 망제가, 俗節에는 別奠이 거행되었다. 또한 의정부, 종친부, 의빈부, 각도의 관찰사 등이 香을 올리는 진향 의식이 계속되었다. 각 의례에 해당 관리가 참여한다는 점에서 빈전례로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례로서, 각 도의 사신과 외관은 국상이 끝날 때까지 삭망의 망곡례를 행한다는 내용을 보충했다.

(4) 因山은 발인을 준비하는 啓殯부터 매장을 마치고 返虞하는 의례에 해당되었다.『국조상례보편』의 '啓殯', '朝祖', '祖奠', '遣奠', '發引儀', '遷奠儀', '下玄宮時望哭儀', '返虞儀'에서 인용하였다. 대상과 내상은 승하 후 5월, 소상과 소내상은 3월에 장례를 치렀다. 산릉으로 출발하는 발인 전날에는 빈전의 찬궁을 치우고

53)『渼湖集』권4,「書·答宋晦可」"爲士者未及出仕, 則如女之未及出嫁, 雖職名至而不敢以是自處者, 固義也. … 且如扇曆書籍之賜, 一切皆受, 而獨於喪服之賜, 諉以未嘗從仕而辭之, 果無所不安乎."; 『櫟泉集』 권6,「書·答渼湖金兄【丁丑】」"然與之爵祿則辭, 與之衰麻則受, 方爲時措之宜, 此亦召役往役之義. 竊恐淵翁所處, 不得爲吾儒中正之道, 未知果如何."

재궁을 닦는 啓殯, 재궁을 받들고 종묘에 조알하는 朝祖, 신시에 길의 신에게 올리는 祖奠을 행했고, 발인 당일 빈전의 戶 밖에서 遣奠을 올린 후 발인이 진행되었다. '발인의'에 따라 대여를 따르는 백관과 도성에 머무는 관리들의 의절 및 前啣宰樞·耆老·學生·僧徒 등이 길가에 차례로 서서 대여가 이르면 곡하고 사배하며 하직하는 의식을 정리했다.

산릉에 도착한 후 '遷奠儀'에 따라 재궁을 현궁에 내릴[下玄宮] 때 백관은 곡하고 절하는 의절을 행했다. 유중교는 散官과 生徒 중 능 아래까지 찾아가는 자는 홍살문 밖에서 참여하여 곡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하현궁 시에 도성에 있는 관리들은 '하현궁시망곡의'에 따라 대궐에 나아가 望哭禮를 행했다. 유중교는 각 도의 사신과 외관도 망곡례를 행하고, 지방의 사서인도 참여하는 것으로 설명했다.

신령이 깃든 우주를 모시고 돌아오는 반우 시에는 백관이 모시고 따르며, 도성에 있던 관리들은 성 밖에 나가 맞이하여 곡했다. 유중교는 산관과 생도도 길가에서 맞이하는 의식에 참여할 수 있고, 백관과 산관 중 관작이 높은 자는 계빈과 졸곡의 사이에 소식을 행하여 애도를 표하는 의절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5) 虞卒哭은 『국조상례보편』의 '우제', '졸곡제', '四時及臘親享魂殿儀/攝事儀', '俗節及朔望親享魂殿儀/攝事儀'를 토대로 백관들의 행례를 정리했다. 魂殿으로 반우한 후 신령을 안정시키는 우제와 哀至哭을 그치는 졸곡제가 행해지고, 졸곡 후 담제 전까지 혼전에서는 四時와 臘日, 俗節과 朔望에 제향이 이루어졌다.

유중교는 국휼의 경우, 『가례』와 달리 졸곡 다음날 새 신주를 사당에 잠시 모시는 祔祭를 지내지 않고 3년 후 부묘례를 행한다는 점을 小註를 통해 설명했다. 또한 현행례에서 외관은 오직 졸곡 때만 망곡례를 행한다는 점을 밝혔다. 한편, 졸곡 후 상복의 변화를 도표로 정리한 變服圖를 첨부하였다.

(6) 練祭는 1주기에 지내는 제사로서, 우주를 練主로 바꾸고 상복을 練服으로 바꾸는 중요한 절차였다. 유중교는 연제 시 祭官의 齋戒 의식을 '四時及臘親享魂殿儀'에서 옮겨 인용했다. 종친과 문무백관은 연제 시 衰服을 갖추어 입고서 자리에 들어가 俯伏하여 곡하고 四拜한 후, 幕次에 나가 머물다가 옷을 갈아입고 다시 들어가 곡한 후 예를 행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국조상례보편』에는 빠져

있지만, 散官과 生徒도 대궐문 밖에 나아가 반열에 참여하고 옷을 바꾸어 입는다는 의절을 추가했다.

또한 향촌에서의 의례에 주목하여, 각 도의 사신과 외관이 정청에서 행하는 의절을 정리했다. '거림'조에 성복 이후 "연제 · 상제 · 담제 시 상복을 바꾸고 벗는 절차는 京官과 같다."는 내용에 따른 것이었다. 또한 향촌에 거주하는 생도도 반열에 참여하고 옷을 갈아입는 의절을 보충했다.

기년복일 경우 연제에 상복을 벗게 되는데, 현행 儀註에 따라 상복을 벗은 당일은 천담복을 입었다가 다음날 吉服으로 갈아입도록 하였다. 또한 이날은 모두 素食을 행해야 한다고 보았다. 연제 후 상복의 변화를 도표로 정리한 변복도를 첨부하였다.

(7) 祥祭는 2주기에 지내는 제사로 백관의 의절은 연제와 동일하지만, 연복을 입고 들어가 담복으로 바꾸어 입는 차이가 있었다. 각 도에서 행하는 의절은 역시 연제와 동일하고, 연제일과 마찬가지로 素食을 행할 것을 주장했다. 상제 후 상복의 변화를 도표로 정리한 변복도를 첨부하였다.

(8) 禫祭는 大祥 후 1달을 걸러서 지내는데, '禫'은 '담담하게 평안'하다는 의미로 상례를 마치는 의례에 해당되었다. 백관들은 담복을 입고 곡하고 절한 후 길복으로 갈아입고 의례를 행했다. 또한 담제 후 상복의 변화를 도표로 정리한 변복도를 첨부하였다.

(9) 祔廟는 담제 후 종묘의 四時와 臘日 제사에 맞춰, 신주를 종묘에 모시는 의식으로 백관이 참여하였다.

(10) 忌辰에는 제관들이 천담복을 입고 제사에 참여하고 각 관아에서는 사무를 보지 않았다. 유중교는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素食을 해야 하고, 관작이 있는 사람은 집에서 소식을 해야 한다고 보았다. 단 모든 국가의 기일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섬긴 先王을 한도로 삼는 방식을 제안했다.

〈표 1〉「방상의절」의 국휼 절차

「방상의절」 항목	『국조상례보편』 항목	인용서 및 학자*	유중교의 견해[按]= 총 28건
聞喪	初終, 戒令, 擧臨, 小斂, 大斂	朱子(3), 南溪, 尤庵(4), 退溪, 栗谷	1)사신은 관찰사와 절도사 등, 외관은 判官과 각 고을 수령 등 2)正廳은 객사의 정청 3)현행례: 지방사람 중 관작이 있는 사람은 외관의 뒤, 유생과 庶民은 문안에 두 줄로 섬 4)현행례: 外村에서는 장소를 정해 모여서 곡함. 罪廢者와 부모상이 있는 사람은 따로 자리를 만들어 곡함. 喪이 있는 사람은 패랭이를 씀. 부인은 담 안 구석진 곳에서 곡함 5)位를 만들지 않고 곡할 때, 절을 하지 않음 6)사적인 음악은 탈상 후 사용, 內喪과 小喪은 임금이 탈상하지 않으면, 사적인 음악 사용 불가 7)성복 전 素食, 관작이 높은 사람은 장례 전까지 소식, 적당히 헤아려 행함 8)擧哀 후 밖에 거주하는 것은 적당히 헤아려 행함 9)국휼 중 시를 짓는 것은 적당히 헤아려 행함
成服	擧臨, 成服, 服制	尤庵, 櫟泉	1)鄕人 중 관작이 있는 자는 대궐에 달려가 곡반에 참여하거나, 고을 관아의 뜰에서 행하거나, 각기 형편에 따라 헤아려 행함. 관작이 없는 자는 관아 뜰에 가서 행하거나 마을에서 庶民과 더불어 행함. 날짜는 부음을 들은 날로부터 계산하여 혼자 행할 수 있음 2)同姓과 異姓으로 시마 이상의 복을 입는 친족으로 관직이 없는 사람은 소내상에서 초종과 성복 시 白衣를 입고 곡을 함 3)동성과 이성으로 시마복 이상을 입는 여자는 소내상에서 초종과 성복 시 白衣를 입고 곡을 함 4)초야 사람으로 관직에 제수되어 아직 관작에 나아가지 않고 평소 유학자로 자처하는 자는 前銜官의 예에 따름, 부모 상중에 있는 자 또한 상복을 입음
殯殿禮	朝夕哭奠及上食, 朔望奠, 議政府率百官進香儀		1)현행례: 使臣·外官은 삭망의 望哭禮를 상이 끝날 때까지 행함
因山	啓殯, 朝祖, 祖奠, 遣奠, 發引儀, 遷奠儀, 下玄宮時望哭儀, 返虞儀		1)散官과 생도 중 능 아래에 이르는 자는 홍살문 밖에서 참여하여 곡함 2)使臣·外官은 망곡례를 행하고, 鄕人의 士와 庶民도 반열에 참여 3)산관과 생도도 길가에서 맞이함 4)백관과 관작이 높은 산관은 계빈과 졸곡의 사이에는 素食을 행해야 함

虞卒哭	虞祭, 卒哭祭, 四時及臘親享魂殿儀/攝事儀, 俗節及朔望親享魂殿儀/攝事儀	尤庵	1)현행례: 외관은 오직 졸곡 때만 망곡례를 행함 2)수릉관·시릉내시가 대상에서 망건 사용
練祭	練祭, 四時及臘親享		1)散官과 生徒도 대궐문 밖에 나아가 반열에 참여하고 옷을 바꾸어 입음 2)향인 생도도 반열에 참여하고 옷을 바꾸어 입음 3)현행의 의주: 상복을 벗은 당일은 천담복을 입고, 그 다음날 바로 길복을 입음 4)이 날은 모두 素食을 행함
祥祭	祥祭		1)산관과 생도도 대궐 밖의 반열에 참여 2)이 날은 모두 素食을 행함
禫祭	禫祭		1)위에서는 微吉한 吉服을, 아래에서는 純吉한 길복을 말한 것임
祔廟	祔廟		
忌辰			1)이 날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素食을 행함. 관직이 있는 사람이 직접 섬긴 선왕의 國忌에 집에서 소식하는 것은 본받을 만함

*()의 횟수는 재인용된 경우를 모두 포함.

3) 國恤 중 私禮의 시행

국휼 중 私家의 (1) 관례는『국조상례보편』에 관련 규정이 없지만 혼례 허용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관례와 혼례는 모두 길한 의례로 간주되었고, 혼례를 허용한다면 관례를 당연히 행할 수 있다고 보았다.[54] 관례 시 빈과 주인은 백의를 착용하지만, 관례를 치르는 자는 3번 衣冠을 바꾸어 입는 예를 행하므로, 하루를 借吉하여 임시로 길복을 입도록 하였다. 단, 雲坪 宋能相의 예설을 따라 賓에게 술잔을 올리는 獻酬儀는 생략했다. 또한 고례에 따라 관례를 올리려다가 국휼의 부음을 들으면 성복을 하면서 그대로 관을 쓰는 것을 허용했는데, 송시열의 예설을 근거로 한 것이었다.

(2) 혼례는『국조상례보편』의 '계령'조에 따라 대상과 내상·소상 및 소내상을 구분하여 허용 기한에 차이를 두었다. 대상의 경우 士·吏·軍·民은 卒哭 후,

54)『常變通攷』권28,「國恤禮·臣民儀」"明齋曰, 按五禮儀, 卒哭後許嫁娶, 借吉三日, 冠昏宜無異同, 則卒哭後借吉而冠, 冠畢, 著白笠, 亦無不可."

實職 3품은 소상 후에 3일간 借吉하고, 당상관으로 喪杖을 받은 자와 실직 2품 이상은 담제 후 혼인을 허용하였다. 내상과 소상에서는 실직 3품 이하는 졸곡 뒤에 3일간 차길을 허락했고 시종신을 거친 당상관 이상은 小祥을 지낸 후에 허혼하도록 하였다. 소내상의 경우는 공제 뒤에 모두의 혼인을 허락하였다.

그런데 유중교는 안설을 통해 이러한 혼인의 차등 규정은 "신랑과 신부 집의 가장을 위주로 말한 것"으로 명시하였다. 이러한 입장은 19세기 향촌 사족으로서 유중교의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국조상례보편』 혼인 규정의 적용 대상에 대한 문제는 정조 10년 문효세자상에서 이미 논의되었고, 혼인 당사자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55] 가장을 위주로 할 경우 자손들이 모두 혼례를 미루어야 하는 반면, 당사자를 위주로 하면 당상관의 자손이라도 대부분 사서인에 해당되므로 졸곡 뒤에는 혼례를 치를 수 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혼례의 경우, 『가례』에서도 신랑신부 양가의 당사자와 혼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기년 이상의 喪이 없어야 거행할 수 있기 때문에 때를 맞추기 어려운 문제가 상존했다. 여기에 국휼의 규제까지 적용될 경우 혼례의 시기를 맞추기가 더욱 어려워졌을 것이다. 따라서 혼인금지에서 오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범위를 축소시킬 필요가 있었으므로, 實職을 대상으로 하고 혼인 당사자로 한정시키는 방안이 마련되었다.[56] 그러나 관직에서 유리된 향촌 사족들의 경우 『국조상례보편』의 實職에 따른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드물었고, 가장과 당사자를 구분하는 현실적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3) 상례는 斂殯부터 吉祭까지의 절차에 대한 시행 여부와 예의 강쇄를 상세히 기록했다. 염빈은 初終 후 成殯까지의 과정으로, 목욕·습·소렴·대렴 등 시신을 수습하는 필수적인 절차였다. 사망 후 신속하게 행해야 하는 만큼, 『禮記』 「曾子問」에 따라 국휼의 성빈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되었다.

---

55) 『日省錄』 정조 10년 6월 20일 "禮曹判書尹蓍東啓言, 喪禮補編禁嫁娶條, 小喪則實職三品以下, 許卒哭後借吉三日, 堂上曾經侍從以上, 小祥後乃行吉禮, 今番以此知委矣. 但實職三品與堂上侍從, 若以家長歸重, 則率下男女, 卒哭與小祥前, 皆不得許婚, 若以當婚者歸重, 則堂上以上之子若孫, 便是士庶, 當無礙於卒哭後借吉, 此宜有一番稟定. … 敎以, 以當者歸重."

56) 김윤정, 2018 「조선후기 王朝禮와 私家禮의 변주: 국휼 중 사가례 논의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79, 180면.

성복은 국휼의 성복과 상관없이 거행하는데, 성복 이후 삼년상의 경우는 그대로 私服을 입고 기년 이하의 경우는 君服을 입는 것으로 정했다. 이에 대해서는 이황과 송시열의 견해에 차이가 있었다. 삼년상의 경우는 동일하지만, 기년 이하의 경우 이황은 아예 사복을 입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송시열은 사복을 잠시 입었다가 다시 군복으로 갈아입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유중교는 송시열의 설을 따랐다.

아침저녁으로 음식을 올리는 朝夕饋奠은 同春堂 宋浚吉의 예설을 근거로 국휼의 성복 전에도 거행하였다. 다만, 朔望奠은『예기』「증자문」에 따라 국휼의 성복 후부터 행할 수 있었다. 이 경우 유중교가 중시한 것은 素食의 문제였다. 생전에 국휼 시 素食을 했다면, 비록 사망한 후라도 소식을 올려야한다는 것이었다. 장례 전에는 살아계실 때와 같게 여기는 象生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생전의 官爵이 소식 여부를 결정하는 근거가 되었다.

장례는『국조상례보편』'계령'조에 따라 공제 전후를 불문하고 모두 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비록 국휼 중이라도 사상의 상여는 채색된 것을 사용하도록 했다. 우제는 장례의 일환으로 간주하여 해당 일에 거행하는 반면, 졸곡은 국휼의 졸곡 후로 미루어 행하도록 했다. 이러한 규정은『국조상례보편』을 그대로 따른 것이었다.[57]

연제와 상제는 국휼의 졸곡 후로 미루어 거행하는데 역시『국조상례보편』을 근거로 하였다. 그런데 유중교는 연제와 상제의 전 날 上食을 올리면서, 국휼로 인해 제사를 지내지 못한다는 사유를 미리 고하고 당일에는 간략하게 술 한 잔을 올리는 방식을 수록하였다. 이것은 송시열의 견해를 따른 것이었다. 또한 국휼의 졸곡이 지나면, 사가의 연제와 상제는 즉시 날을 정해 거행할 수 있다고 보았다. 古禮의 주석에는 君服을 벗은 다음 달에 제사를 지낸다고 했지만,[58]『국조상례보편』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으므로 졸곡 후 바로 연제와 상제를 거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어머니상을 당한 경우는 齊衰杖期를 입고 11개월

57)『국조상례보편』'계령'조 성립 과정은 김윤정, 위의 논문, 182-188면 참조.

58)『禮記集說』권4,「曾子問」"假如此月除君服, 卽次月行小祥之祭, 又次月行大祥之祭."

에 연제, 13개월에 상제를 지냈으므로 연제와 상제를 모두 국휼의 졸곡 후로 미루어 지내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러한 경우 연제를 지내고 날을 정해 다음 달에 상제를 지내도록 했는데, 『예기』「상복소기」를 근거로 한 것이었다.

담제는 담담하고 평안하다는 의미를 갖는 만큼, 국휼의 졸곡 전에는 사가의 담제를 지낼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담제는, 담제를 지내야 하는 기한이 지나면 미루어 행하지 않도록 하였다. 이러한 규정은 『예기』「상복소기」의 "3년 후에 장사를 치른 경우"에는 "담제를 지내지 않는다."를 근거로 한 것으로, 국휼뿐만 아니라 상례가 겹치는 모든 경우에 통용되었다.[59] 또한 담제를 지내지는 못하지만, 담제를 지내야하는 달의 丁日이나 亥日에 虛位를 만들어 곡하고 상복을 벗도록 했다. 만약 국휼의 졸곡 후 아직 담제 달이 지나지 않았으면, 상제를 지낸 후 같은 달에 담제를 거행하도록 했는데 모두 송시열의 예설에 근거한 것이었다.

길제는 상례를 마치고 신주를 사당에 合祔하는 절차로서, 국휼의 졸곡 후로 미루어 행했다. 단, 제사 음식을 나누어 먹는 餕의 절차를 생략하여 평상시와의 차이를 드러내도록 했다. 유중교는 遂菴 權尙夏와 鏡湖 李宜朝의 예설을 비교하면서, 후자에 따라 제사 후 고기를 나누어 주는 受胙를 행하는 것으로 정했다. 수조의 금지는 권상하 뿐 아니라 송시열, 박세채 등이 모두 『가례』의 "正祭에 三獻을 하고 수조하는 것은 상중에 행할 바가 아니다."라는 주자의 설에 따른 것이었다. 반면, 이의조는 "삼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조하지 않는 것이지, 만약 삼헌을 행하였다면 어찌 수조하지 못할 이치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수조를 허용했다.[60] 유중교는 이의조의 설이 적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따랐다.

(4) 제례는 시제의 경우 길제와 동일하게 졸곡 후 행하고 餕의 절차를 생략하였다. 『국조상례보편』에는 시제에 대한 규정이 없지만, 시제는 길례인 정식제사로서 국휼 뿐 아니라 사가의 상례가 있는 경우에도 지낼 수 없었다. 따라서 국

59) 『常變通攷』 권20, 「喪禮 · 禫 · 過時不禫」 "小記三年而後葬註, 已祥則除, 不禫. … 南溪曰, 或因喪故, 行大祥於禫月, 則更無行禫之義."

60) 『家禮增解』 권12, 「喪禮八 · 【備要】 吉祭」 "此遂菴說及上心喪中重喪吉祭南溪說, 皆以不受胙立論. 然朱子所謂正祭三獻受胙, 非居喪所可行云者, 以喪中祭, 不得三獻, 故亦不受胙也, 若行三獻, 則豈有不受胙之理也."

휼의 졸곡 전에는 당연히 지낼 수 없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기제 역시 졸곡 이후 행하는데, 先儒의 설에 따라 당일 날 간단하게 차려 정성을 드러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국조상례보편』'계령'조에서 기제와 묘제를 연제와 상제에 의거하게 하였으므로, 역시 간략하게 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중교는 당시 士大夫家 중에『국조상례보편』의 규정에 따라 기제를 졸곡 후로 미루어 행하면서, 기제 당일 간략하게 차리는 예를 폐지하는 경우가 많음을 비판했다.

이 문제는『국조상례보편』이 간행된 직후, 노론-낙론 학자들인 任聖周와 朴胤源의 논쟁에서도 제기되었다. 임성주는 單獻하는 간략한 방식으로 거행하는 것을 인정한 반면 박윤원은 국장의 졸곡 후로 미루는 국가의 금령이 있기 때문에 기제 당일에는 단헌도 행할 수 없다고 보았다. 박윤원은 "만약 율곡과 우암 두 선생이 제사를 금하는 지금 시기에 계셨다면, 반드시 단헌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국가의 금령을 강조하였다.[61] 유중교는 임성주와 동일한 견해를 갖고 있었다.

묘제 역시 졸곡 이후 행하는데, 기제와 달리 간단하게 차리는 예는 생략했다.『국조상례보편』에서는 기제와 묘제를 함께 규정했음에도 유중교는 구분하여 인식했다. 이이와 김장생은 국휼 졸곡 전에 묘제를 중지한 반면, 송시열은 간략하게 차려야 한다고 주장했음을 인용하면서, 자신은 이이와 김장생을 따른다고 설명했다. 유중교는 기제와 달리 묘제는 정해진 날이 아니고 산에서 행한다는 점 등을 들어 차등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62]

正至朔望의 參禮는 제현의 설에 따라 졸곡 전에도 행하도록 했는데, 참례는 간략하여 제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었다.[63] 새로 난 제철

61)『鹿門集』권6,「答朴永叔」"忌祭則固當廢之, 而二祥日則與常時忌日有異, 並與單獻而廢之, 終有所不忍, 略設而哭之, 亦何妨耶?";『近齋集』권6,「與三山齋金公」"私家祭祀, 虞祭外忌墓祭, 亦令國葬卒哭後行之, 則並與單獻, 而似不可行矣. 雖有先賢之論, 於此只得遵朝令而已. … 愚意惟當以禁祭前後看出義理, 若使栗尤兩先生在於今日禁祭時, 則必不令單獻矣."

62)『省齋集』권45,「柯下散筆・柳氏家典・奉先第二」"惟墓祭繫是原野之禮, 雖略行, 亦涉難安. 且其行祀無定日, 與忌祭不同."

63)『국조상례보편』간행 이후 임성주는 "큰 절목 안에 작은 것들은 자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하면서, 선유설에 따라 계속 행해왔던 삭망참도 폐지하겠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음식을 올리는 薦新은 송시열의 설에 따라 졸곡 전에 禮를 줄이는 방식으로 행하도록 했다. 명절제사인 俗節은 김장생의 설에 따라 졸곡 전에는 폐지했다. 집안의 土神祭는 시제와 같이 졸곡 후에 행하는데, 흰 의관을 착용하도록 했다.

(5) 家人禮에서 삭망에 參謁하는 의절은 성복 후에 행하지만, 獻壽 및 집안의 연회는 졸곡 후 예를 줄여 행하도록 했다. 또한 국휼의 졸곡 전에는 도살을 금지하므로 조상 제사와 부모 봉양에 법을 어기고 도살한 고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경계했다.

(6) 鄕黨禮에서 향약의 모임인 讀約會는 성복 후 즉시 행하지만, 술은 올리지 않았다. 鄕飮禮와 鄕射禮는 상을 마치는 삼년 후에 거행하도록 하였다.

(7) 學宮禮는 향교와 서원, 서사의 의례로 구분하였다. 향교의 경우 『국조상례보편』에 따라 齋에 머물 때는 白衣·白巾을 착용하고 殿에 오를 때는 黑巾을 쓰며, 祭享은 졸곡 후에 행하고 졸곡 전에는 분향만 하도록 하였다. 書院은 廟에 들어갈 때라도 白巾을 쓰는데 그 외 제향은 향교의 예와 동일했다. 書社의 講會는 성복 후부터 즉시 행하도록 하였다.

국휼 중 사례의 문제는 吉과 凶, 公과 私를 조율하는 복잡한 논의를 거치면서, 다양한 예설로 분화되었다. 유중교는 김장생, 송시열 등 기호학파의 예학을 중심으로 했지만, 학파 내부에서도 예설의 분화가 심화되면서 자신의 예학적 판단에 따라 선택할 필요가 있었다. 그는 축적된 예설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방상의절」에 수록했고, 선택된 예설들은 새로운 권위를 얻게 되었을 것이다.

〈표 2〉 국휼 중 私禮 의절

		인용	유중교의 안설
冠禮	**졸곡 후,*** 國制의 혼례 허용 규정에 따름	『國朝喪禮補編』	
	관자는 借吉, 빈과 주인은 白衣 착용. 獻酬 생략	雲坪	
	관례를 올리려다가 聞喪하면, 成服하여 관례를 행함	尤庵	

했다(『鹿門集』 권6, 「答朴永叔」 "儀註中不言俗節朔望參, 或者所謂以大包小云云似是. 鄙家初從先儒說, 朔望參則行之矣. 【俗節則廢.】 更思之未安, 故方欲改之耳.").

昏禮	대상: **졸곡 후**(士吏軍民), **소상 후**(실직3품이하) 3일 차길, **담제 후**(실직 2품 이상 등) 내상·소상: **졸곡 후**(실직3품이하) **소상 후**(시종을 거친 당상관 이상) 소내상: **공제 후**	『國朝喪禮補編』	1)이상의 職品은 모두 신랑과 신부 집의 가장을 위주로 함
	잔치를 열어 손님을 초대하지 않고 신랑신부의 복장 등을 평소보다 줄임	朱子	
喪禮	斂殯: **성빈 전**	『禮記』「曾子問」	
	成服: **성복 전** / 삼년상이면 私服, 期·功은 君服을 평상시에 입음	遂庵, 退溪, 尤庵(2)	2)期·功 이하의 服에도 잠시 해당 상복을 입고 예를 행함 3)우암이 군복의 백립과 사복의 포대를 함께 착용하는 것을 비판한 것은 『국조오례의』의 백관상복 규정에 의한 것
	朝夕饋奠: **성복 전** / 궤전에 素食을 쓰는 것은 살았을 때의 관작의 품계에 따름	同春堂 / 愼獨齋	4)象生의 禮에 따라 소식을 올림
	朔望殷奠: **성복 후**	『禮記』「曾子問」	
	葬禮: **공제 전후**	『國朝喪禮補編』	
	發引: 길에서 君喪을 들으면, 매장한 후 가서 곡함	『禮記』「曾子問」	
	喪輿: 채색	尤庵	
	祠后土: 흰 의관을 사용	尤庵	
	三虞: **국장 전** 卒哭: **졸곡 후**	『國朝喪禮補編』	
	練祥: **졸곡 후** / 연상 전날 上食 사유를 고하고, 당일에 술 한 잔을 올림 / 국장의 졸곡 후 즉시 연상 날을 정하여 미리 궤연에 고함 / 부재위모상의 경우 졸곡 후 연제를 행하고, 다음 달 상제를 행함	『國朝喪禮補編』 / 尤庵 / 古禮(『禮記』「曾子問」) / 『禮記』「喪服小記」	5)古禮의 주석에 따르면 군복을 벗는 다음 달 제사를 행하지만, 국제에는 '다음 달'이라는 한정이 없으므로 같은 달도 가능
	禫祭: 추후에 행하지 않음 / 군상이 상제 후면, 담제를 지내야 되는 달의 丁日이나 亥日에 곡하고 상복을 바꿈. 담제 달이 지나지 않았으면 군상의 졸곡 후 상제를 지내고 같은 달에 담제 거행	尤庵	
	吉祭: **졸곡 후**, 餕 절차생략	遂庵, 鏡湖	

祭禮	時祭: **졸곡 후**, 餕 절차생략		
	忌祭: **졸곡 후**, 기제일에 술 한 잔만 올림		
	墓祭: **졸곡 후**		6)栗谷과 沙溪는 국상 졸곡 전에는 묘제 폐지, 尤庵은 간략 설행. 지금은 율곡과 사계를 따름
	正至朔望參: **졸곡 전**	諸賢의 설	
	薦新: **졸곡 전**, 예를 줄임	尤庵	
	俗節: **졸곡 후**	沙溪	
	집안의 土神祭: **졸곡 후**, 時祭에 준함, 흰 의관을 착용		
家人禮	朔望參謁: **성복 후**		
	獻壽와 연회: **졸곡 후**, 예를 줄여 행함		
鄕黨禮	讀約會: **성복 후**, 술은 제외		
	鄕飮禮鄕射禮: **삼년 후**		
學宮禮	校宮: 齋에 머물 때는 白衣·巾, 殿에 오를 때는 黑巾 착용. 祭享은 졸곡 후, 졸곡 전에는 焚香만 함	『國朝喪禮補編』	
	書院: 廟에 들어갈 때 白巾 착용, 제향은 교궁과 같음		
	書社: 講會는 **성복 후**		

* 私禮를 행할 수 있는 국휼 절차의 시점을 밑줄 친 진한 글자로 표시하였음.

4. 맺음말

유중교의 예 관련 저술은 실천을 위한 의절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유중교는 서원 철폐 이후 書社를 중심으로 예를 講學하고 習禮하기 위한 의절들을 저술했다. 영남만인소 사건을 계기로 고흥유씨의 세거지인 가정으로 이주한 후에는 문중 중심의 의절을 통해 친족과 향촌 공동체의 교화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예교의 실현을 위해 다시 도성과 멀리 떨어진 제천 장담으로 이주했고, 契를 중심으로 하는 향촌의 예교에 주목하였다. 사대부 유학자로서 임금에게 춘추대의를 지킬 것을 간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신의 집안과 종족 그리고 학교와 향촌을 중심으로 의례를 재정비하여 道學을 실천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유중교는 의례의 실천과 예교의 확립을 통해 유교적인 의리를 고수함으로써,

오랑캐를 물리치고 춘추대의를 보존하고자 하였다. 유중교의 예교 실천에서는 첫째, 書社가 예교 공동체의 구심점으로 확립되었다. 서사에서 익힌 예를 향촌 공동체에서 실천함으로써 서사가 주도하는 향촌의 예교가 강조되었다. 둘째, 친족 공동체에서 향촌 공동체로 예교의 확장이 진행되었다.「유씨가전」은 문중의 규범이지만 향촌에서의 예교를 포함하고 있었고,「堤川長潭里立契約束」은 예교의 대상이 향촌 공동체로 확대되었음을 보여준다.

유중교의「방상의절」은 국휼 시 행하는 臣民의 의례를 정리한 것으로, 향촌에서 사족의 위상을 강조하였다. 먼저,「방상의절」은 行禮에 활용하는 의절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보여준다. 국휼 절차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보충하여, 참고하기 편리하게 구성하였다. 또한 조선 예학을 집대성한『예의유집』,『가례증해』등의 예서를 통해 다양한 예설들을 검토하고, 자신의 예학적 판단을 근거로 명확한 행례의 지침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방상의절」은 국휼 시 향촌에서의 의절을 보충하고, 향촌 구성원의 차등적 지위를 규정했다. 사족은 백관과 같은 상복을 입고 庶人과는 다른 위치에서 곡을 행하는 등 차별적 지위를 드러낼 수 있었다. 이렇게 국휼이라는 국가 차원의 의례는 예교의 주체인 사족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향촌의 예교를 통해 대내외적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던 유중교에게, 사족의 우월한 위상과 역할은 예교의 실천을 위한 토대가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시도들은 예교를 통해 춘추대의를 보존하는 것으로 위정척사를 위한 또 다른 방식의 실천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의 사후 국왕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화서학파는 의병을 통해 춘추대의를 실천하고자 하였고, 유중교의 문인과 후손들이 대거 참여했다는 점에서 유중교의 예교를 통한 실천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서구 문물과 제국주의의 침입이라는 위기의 시대에 위정척사론은 조선 지식인들의 실천적인 움직임이었다. 결과적으로 조선은 식민지가 되었고, 위정척사는 실패한 운동으로 인식되었다. 예교를 통한 사회질서의 강조 역시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망국의 길을 걷게 된 원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폭력적인 제국주의의 흐름 속에서, 식민지화의 원인을 내부에서만 찾는 것은 한계가

있다. 시대의 변화에 괴리되어 있었다 할지라도 유교적 도덕과 이념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조선의 유학자로서, 그들의 이론과 실천이 갖는 의미를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읽어내는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주제어 : 省齋 柳重敎, 禮敎, 書社, 行禮, 士族, 「方喪儀節」

투고일(2019. 7. 31), 심사시작일(2019. 8. 9), 심사완료일(2019. 8. 20)

〈Abstract〉

The Ritual Practice of SungJae LyuJoongkyo and *Bangsang-uijeol* *

Kim Yunjung **

Ritual-related writings of LyuJuoongkyo were centered on the content for practice. He wrote the manual to practice rituals in Seosa, after the seowon was removed. After moved to gajung, village of Gohung Lyu Clan, on the occasion of Yongnammaninso(嶺南萬人疏), he attempted to edify his kin and local community through the manual of clan. However, for the realization of ritualistic social system, he moved to jangdam, which is far away from Seoul, and paid attention to the ritualistic edification of local community centered on the Gye. As a Confucian scholar of the Sadaebu, he promised to keep Justice of the Spring and Autumn Annals to the king, but when he was not accepted, he tried to reorganize the rituals centering on his family, his clan, his school and his village and practice Confucianism.

He tried to defeat the savage and keep Justice of the Spring and Autumn Annals by adhering to Confucian righteousness through the practice of ritual. To the ritualistic edification, First, the Seosa was established as the center of the ritualistic social system. Second, the expansion of the ritualistic social system from the relative community to the local community was progressed.

Bangsang-uijeol of LyuJoongkyo was the manual of the rituals of bureaucrats and people during the national funeral, emphasizing the status of the sajok in the village. First, it was well revealed as a manual that was used for practice. It was composed to convenient to refer about national funeral, through the method for constituting the process and supplementing the specific content. In addition, various ritual theories were reviewed through *Yeuiryujip, Garyejunghae* that compiled the ritual study in chosun and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2018 Twenty-First-Century New Kyujanggak Archival Program of the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KIKS)(2018-452-24303-The Ritual Practice of SungJae Lyujoongkyo and Bangsang-uijeol).

** Research Professor, Institute of Korean Studies, Yonsei University.

a clear guide for the practice was presented based on his own judgment.

Next, it supplemented the rites in the local village during the national funeral and defined the differential status of the people of the local village. Sajok showed a discriminatory status in a way that wore mourning cloths like a bureaucrats and cried in a different position from people. The national funeral became an important opportunity to establish the identity of Sajok, the subject of ritual edification. For LyuJoongkyo, who tried to overcome the internal and external crisis through the ritual edification of the local village, the superior status and role of Sajok would have been the basis for the practice of the ritualistic social system.

These attempts are to keep Justice of the Spring and Autumn Annals through ritualistic social system, and it could be said that it was another way of practicing for Wijeongcheoksa ideloogy. After his death, in the situation which the king was threatened by foreign powers, Hwaseo-school tried to practice Justice of the Spring and Autumn Annals through the Righteous Army Movement, and his disciples and descendants participated in the Movement. In this respect, his practice of ritualistic social system could be told have achieved results.

Key Words : SungJae LyuJoongkyo, Ritualistic social system, Seosa, Practice of rituals, Sajok, *Bangsang-uijeol*